

붙임

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

대상자	발급방법(시행일시)	확인방식
접종완료자	1) 전자증명서(시행 중) * COOV, 네이버, 카카오톡 등 2) 종이증명서(시행 중) (예방접종증명서) 3) 예방접종스티커(시행 중)	1)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*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)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*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)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
PCR 음성 확인자	1) PCR 음성 결과통지서 1-1) 문자 통지서('21.11.1~) 1-2) 종이증명서*('21.11.1~) (PCR 음성 확인서) 2) 전자증명서('21.12월말~)	1-1) 문자 통지서 *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-2)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*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)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
확진 후 격리해제자 (이하 완치자)	1) 종이증명서(시행 중) (격리해제확인서) 2) 전자증명서('21.12월말~)	1)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*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
예외자* (의학적 사유)	1) 종이증명서('21.11.1~)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) 2) 전자증명서('21.11월 말~) * 기타 사유자는 12월말부터	2)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*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

- *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12월말부터 가능
- *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으며(본인 신분증으로 증명) 주민등록증,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신분증, 청소년증,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(청소년증 발급확인서), 여권,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(학교장 확인 필요), 학생증, 재학증명서,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
- * 영·유아, 어린이 등 육안으로도 명확히 18세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분증 확인 불필요